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13일, 정부 제출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11. 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4. 11. 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11. 21.) 상정, 소위심사보

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부)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사업을 등록한 자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선영)

개정안은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을 통해 일정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추도록 유도하여 어선건조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해 불법 어선 건조·개조의 유인을 축소하는 한편, 어선검사 후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설치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어선건조·개조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한편, 개정안은 등록대상이 되는 어선건조·개조의 개념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어떠한 수리행위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되는 수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다소 불명확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현행법 제2조에 따른 개조의 개념만으로는 어선의 불법개조를 방지하여 어선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하위법령을 통해 ‘어선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행위'를 개정안에 따른 '개조'의 범위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건조·개조업과 아울러 수리 역시 등록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보다 예측가능하게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개정안은 등록업체가 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정부에서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위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소상공인 등에게 등록기준 미충족 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안의 경우에도 이러한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어선건조·개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어선건조·개조업계가 전반적으로 영세하고 평균적으로 인력이나 시설·장비 등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높은 수준의 기준을 바로 적용할 경우 업계에 혼선을 초래하거나 사업 포기를 유발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법 시행 전에 충분한 홍보 및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등록기준을 설정해 업계의 적응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 조경태 위원)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